

●인천병무지청공고 제2026-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9월 02일

인천병무지청장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및 기한내 귀국 통보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70조,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모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유예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실시하였으나, 당사자의 불출석 및 의견 개진(부득이한 사유 소명) 없어 청문을 종결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기한내 귀국 통보를 통지하고자 하나, 현재 병역의무자 및 부는 국외 체재중이며 병역의무자의 연락처 및 외국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조성제	2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 행정 처분내용

－ 공고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2026.11.10.)

－ 귀국기한(2026.12.10.까지 귀국) 지정

* 귀국기한 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2-740-2500)